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14호서식]

○○지방중대범죄수사청

제 호 . . .

수 신: 귀하

제 목: 구제신청권 안내서

접 수 일 시		접 수 번 호	

○ 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의3제9항 및 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」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내드립니다.

○ 고소인 · 고발인 ·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(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·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)은 수사관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,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○ 구제신청의 대상, 신청 절차 및 향후 처리 과정 등에 대해서는 아래 관할 공소청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관할 공소청	☎

※ 그 밖에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

□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 등

◦ **수사 이의제기**: 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11

-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된 경우, 수사관이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, 그 밖에 위법 · 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고소인등은 담당 수사관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,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관 교체,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,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.

◦ **수사 심의신청**: 민원콜센터(국번없이 000)

-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심의담당관실(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인권양성평등담당관실)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다만, 입건 전 조사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증거 등의 허위·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심의신청이 가능합니다.

※ 고소인·고발인은 형사사법포털(www.kics.go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□ 그 밖의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

◦ 범죄피해자 구조(범죄피해자보호법): 관할 지방공소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
◦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(의사상자법):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
◦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(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): 각급 법원에 신청,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
◦ 가정폭력·성폭력·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: 여성 긴급전화(국번없이 1366),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 등
◦ 범죄피해자 무료 법률구조: 법률구조공단(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·출장소)에 손해배상청구, 배상명령신청, 소송대리 등 상담 가능
◦ 범죄피해자지원센터(국번없이 1577-1295): 피해자나 가족,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
◦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: 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, 정부민원안내콜센터(국번없이 110)
◦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: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(www.humanrights.go.kr), 인권상담전화(국번없이 1331)

○○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